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2조(추정전부손해)
제13조(현물보상)
제14조(잔존물)
제15조(회수품의 귀속)
제16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1조(청약의 철회)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26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2조(계약의 해지)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4조(위법계약의 해지)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6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소멸시효)

제40조(약관의 해석)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개인정보보호)

제44조(준거법)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약관

전기적사고보상 특별약관

기계적 사고보상 특별약관

수리위험보상 특별약관

풍수재위험보상 특별약관

지진위험보상 특별약관

상품포괄 특별약관

전시품포괄 특별약관

전시물품 재조달가액보상 특별약관

악기특별약관

잡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중복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할부금융회사 할부물건 특별약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재조달가액 보상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보세구역-항양 본선간보상 특별약관

적용환율 특별약관

중장비 추가약관

전자기기 추가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신규취득 재물담보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자기부담비율 특별약관

도난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4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9.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10.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별도로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수리, 청소 등의 작업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유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의 목적의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화재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들의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우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

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도난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손해액의 합계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일만원을 뺀 잔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보험의 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그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부손해로 처리됩니다.

제12조(추정전부손해)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리하는데 소요될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
2. 보험의 목적을 적재한 수송용구가 60일이상 행방불명인 때

제13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잔존물)

보험의 목적이 전부손해로 되고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5조(회수품의 귀속)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보상한 후 그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 또는 점유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증권에 기재한 용도 또는 사용지역이나 사용장소 이외에서 사용 또는 보관할 때
4.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의 목적의 사용지역 또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를 개조, 수리 또는 기타의 작업을 할 때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 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3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

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2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특별약관

전기적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원인이 되지 않은 전기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5만원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계적 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은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언제나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
2.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과도한 운전이나 과하중(過荷重) 상태에 두지 않는 것
3. 보수(保守) 와 운전에 관한 법령 기타의 규칙을 지키는 것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리위험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수리, 청소등의 작업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풍수재위험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당해 보험의 목적의 가액의 2%해당액 또는 50만원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2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해당보험의 목적의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포괄 특별약관

제1조(운송보험료)

① 계약자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보험기간중의 예상수송량에 대한 운송잠정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송량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운송의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잠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징 또는 돌려드립니다.

제2조(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 반입되는 때 시작하고 그 장소에서 반출되어 목적지에 반입되거나 매수인 등에게 인도된 때 끝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기간을 초과하여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상품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가 행하 거나 가담한 도난행위 기타 부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2. 재고조사를 할 때 발견된 손해

제5조(운송중의 보험가액 및 1사고당 보상한도액)

운송중에 대하여는 보험의 목적의 매도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회사는 운송중 1사고에 대하여 원을 한도로 그 실손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6조(장부의 열람)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그 대리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중 또는 그 종료 후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에 관한 장부, 기록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시품포괄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에서 반출된 때에 시작하고 전시회장에서 전시를 거쳐 그 보관장소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되는 때 끝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을 초과하여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전시를 목적으로 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통상의 수송경로를 통하여 운송중이거나 전시회장에서 보관 또는 전시중에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가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행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아래의 작업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파손, 망가짐, 곡손 및 훼손
   가. 보험의 목적을 포장하거나 풀거나 하는 작업
   나. 보험의 목적의 진열, 설치 또는 철거작업
   다. 가. 및 나.의 작업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이동 운반작업

제4조(보험가액의 협정)

① 귀금속,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시물품 재조달가액보상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3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전시물품에 한하며, 동물(어패류 포함) 이나 전시회장내에서 기계, 기구, 장치 등의 실연을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 및 실연에 의해 생성된 물건은 제외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 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 가액보다 작을 때: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X보험가입금액/재조달가액

②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③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제5조 (분담조항)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보험계약에서 이 특별약관 부담내용의 포함여부를 묻지 않고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이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악기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악기에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현(피아노선을 포함합니다) 의 절단 또는 타악기(打樂器)의 타피(打皮)의 파손만의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다른 부분과 동시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음색 또는 음질의 변화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잡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의(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잡위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잡위험라 함은 우(雨), 담수유(淡水濡), 강설, 수해(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에 기인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 기타 면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위험으로서 특히 아래의 위험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1. 화재
2. 도난
3. 파손

4-1. 폭발, 파열

4-2. 항공기의 추락이나 접촉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낙하

4-3.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4-4.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5. 기타 특약으로 보상하는 위험

중복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유효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계약내용			
	보험종목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대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닌 한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책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될 때(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 시작하여 그 보험목적물에 대한 리스 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 할 경우에는 재리스 기간)이 종료한 때 끝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리스(임대) 회사가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별표 4]의 제2란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생기는 손해
2. 망가짐, 찰손, 칠감의 탈락 및 그밖의 단순한 외관 손상으로서 보험의 목적의 기능에 직접 관계가 없는 손해
3. 재고조사 또는 검품시 발견된 품량부족손해
4. [별표 1]에 기재된 물건에 생긴 손해. 그러나 화재, 폭발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 또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적재하는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별표 2]에 기재한 물건에 대하여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폭동, 소요 또는 이와 비슷한 집단행동으로 생긴 손해
6. [별표 3]에 기재된 물건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
   가. 구열, 찰상, 주름, 칠의 벗겨짐(도장, 페인트 등), 요철손, 변색, 퇴색 또는 색바램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온도, 습도의 변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화재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보험의 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작업 중에 생긴 손해
8.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종업원, 채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의 개별적 사유로 인한 사기, 횡령, 망실, 분실에 의한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손해
9. 도난손해가 생긴후 30일 이내에 도난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손해
10. 도난시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지 않은 손해

제5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 손실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며, 계약시 보험가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 연도초: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 연도중: 당해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 차년도(둘째년도)의 규정 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규정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한다.
3. 제10조(가치하락 보상제외)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제1항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

전년도 리스기간 중 부도 등 리스계약서 기준의 해지사유가 발생된 경우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당해연도 리스기간 중 부도 등 리스계약서 기준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32조(계약의 해지)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정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된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의 규정손실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경우
   사고당시 규정손실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단, 사고당시 규정손실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
   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나. 보험가입금액이 규정손실금액을 초과하고 위 가목에서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가치하락 보상제외)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

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12조(도난품 발견시의 처리)

보험금 지급이전에 도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단, 보험목적물 등의 훼손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렌탈계약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용어중 “리스”는 “렌탈”로 “규정손실금액”은 “계약자의 렌탈(임대차)계약서상 정산렌탈료”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상 매년 해당규정 렌탈료표가 있는 경우(장기렌탈)는 특별약관을 따르며 규정렌탈표가 없는 경우(단기렌탈)는 이 특별약관을 준용하나 보험금 지급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1]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항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Roll속구 Felt, 스크린, Baffle-Cross
2. 전구, 진공관 기타 이와 비슷한 관구류

[별표 2]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항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대학에서 사용관리하는 물건
2. 텔레비젼 중계차의 탑재기기

[별표 3]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항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미술품
2. 골동품

[별표 4]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풍수해위험을 부담하는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주정, 요트, 모타보트, 통선 기타 주정
2. 육상 콘테이너(금속재에 한함) 및 용기(이동형으로 금속재로 된 것에 한한다)

할부금융회사 할부물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융약정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할부금융 기계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생기는 손해
2. 망가짐, 찰손, 칠감의 탈락 및 그 밖의 단순한 외관 손상으로서 보험의 목적의 기능에 직접 관계가 없는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작업 중에 생긴 손해

제4조(질권의 자동설정)

회사는 할부금융회사가 이 보험의 계약자인 경우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용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잔여 할부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질권 설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권자는 위 제2조의 할부금융회사가 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가액)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①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②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액 이상으로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보험기간 종료후 재고정산 요청이 있는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최종통지재고가액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확정보험료 계산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은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50% 해당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가 이미 낸 예치보험료를 밑돌면 그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정한 기일내에 최종 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X 최종통지재고가액/최종재고가액 통지당시의 실제재고가액

③ 초회 통지 기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정한 기일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X 보상한도액 또는 최종통지재고가액 중 높은 금액/사고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액

⑤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 1,2,3,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위 제 1,2,3,4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단위 계산에 의한 복원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용어의 풀이>

복원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로 손해보상금이 지급될 때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보상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3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가재도구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재조달가액기준의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여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세구역-항양 본선간보상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험보장의 시기 및 종기)

이 특별약관의 보험책임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안에 보험의 목적을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로부터 시작하여 선적항의 항양 본선에 인도된 때에는 끝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보세구역에서 항양 본선까지 운송되는 도중에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 침몰, 좌초, 교사 기타 모든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3. 해지 환급보험료: 해지일
4.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제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장비 추가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추가약관에서 부담하는 보험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기가 아닌 건설, 토목, 하역, 농광업 기계(이하 「중장비」라 합니다) 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장비의 운행관리에 사용되는 공구류와 윤활유, 연료 등의 운전용 자재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
2.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3. 보험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 작업중에 생긴 손해
4. 수리정비 또는 검사시 발견된 손해

① 아래의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의 목적에 다른 부분과 동시에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벨트, 체인, 햄머부분, 도르레, 쇼벨 등 소모품 또는 소모재
2. 유리부분

제4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이 계약 기간중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그때로부터 자동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기기 추가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추가약관에서 보상하는 전자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 본체(제어장치, 연산장치 및 기억장치 등)
2. 주변기기(테이프장치, 디스크장치, 입출력장치 등)
3. 관련기기(카드펀치, 키테이프, 미니콤, 각종 단말기기 등)
4. 컴퓨터실 전용설비(수배전설비, 냉난방, 공조설비 등)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컴퓨터등 전자기기에 생긴 손해를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가스, 용수 및 전기의 공급 불능 또는 중단으로 생긴 손해
2. 공기의 건조 및 온도 또는 습도의 변화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물의 제작자 또는 공급자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책임지는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냅니다.

제2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그 정한 날짜까지 내어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보험계약을 맺을때(연보험료의 70%해당액)
   제2회:년 월 일(연보험료의 30%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보험계약을 맺을때(연보험료의 40%해당액)
   제2회: 년 월 일(연보험료의 30%해당액)
   제3회: 년 월 일(연보험료의 15%해당액)
   제4회: 년 월 일(연보험료의 15%해당액)

②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규취득 재물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신규로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보험계약을 구성하는 보통약관과 다른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신규취득 재물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단, 신규취득 재물은 이 보험계약에 기 가입된 재물과 동일한 종류의 동산에 한합니다.

제2조(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한 신규취득 재물에 대한 보장은 다음 각호의 시점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기시점

나. 신규취득 시점으로부터 ( )일 경과한 시점

다. 신규취득 재물을 추가로 가입한 시점

② 각 신규취득 재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은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의 보험가입금액의 ( )%를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

보험계약자는 신규취득 재물에 대해 신규취득 시점으로부터 ( )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규 취득한 시점부터 취득가액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즉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용,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상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상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비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② 자기부담금이 함께 설정된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공제한 후에 자기부담비율을 적용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도난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난위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계약자인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② 총 피보험자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①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

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1〕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6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7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6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 피보험자 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5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7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5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9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10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사 명의 또는 계약자, 보험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양식1)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또는 E-mail)	상품구입일